

하나님께 영광을 세상에게 모범을

- 2012년 깨끗한 총회 캠페인 -



1. 깨끗한 총회를 위한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2.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목회자 소득세 신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3. ‘전병욱 목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권징과 치리가 있어야 합니다.
4. 신학부의 ‘목회자 윤리강령’ 청원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사)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깨끗한 총회를 위한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기윤실은 한국교회가 금권선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가 교단선거법의 선거운동 범위와 징계규정이 모호한 데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법률가와 교단 총대들로 구성된 “기윤실 교단선거법 개정위원회(위원장 김고광·수표교교회 원로목사)”를 통해 공직선거법과 비교하여 교단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왔습니다.

각 교단별 선거규칙 비교

	불법선거금지 관련 조항													처벌 관련 조항			
	금품수수	접대행위	기부행위	상대비방	유인물배포	각종방문	광고기고	집단지지	후원회결성	회유압력	강사초청	강사출강	교회재정	당선무효	후보취소	후보제한	처벌유무
기감	○	○	○	○	○	X	○	○	X	X	X	X	○	○	○	○	X
통합	○	○	○	○	○	○	○	○	X	X	○	○	X	X	X	X	X
합동	○	X	X	X	X	X	X	X	X	○	X	X	X	X	○	○	X

기윤실의 개정안에는 ▲선거 시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1천만 원 한도에서 향응 금액의 5배 이상 20배 이하에 상당하는 제재금을 부과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은 피선거권과 총화·노회의 대의원권을 박탈해 교회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게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즉시 관계당국은 해당 사건을 의무적으로 기소해야 하며 재판국은 60일 이내에 판결하도록 해 암묵적으로 부정선거를 용인하거나 판결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비용은 교회나 노회 재정이 아니라 개인이 부담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른 교단도 공명선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의 경우 공명선거감시단을 만들고 불법선거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리교 역시 60일이었던 선거기간을 20일로 줄이고 선거권자도 모든 정회원으로 확대해 투표권자의 수를 2배가량 늘리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기윤실·예장합동·감리교 등 선거법 개정 위해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는 모범이 되는 교단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교단의 선거조례가 ‘공직선거법’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기윤실은 각 교단이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각 교단 실정에 맞게 개정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총회 대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교단선거법 개정안

- 교단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윤실 홈페이지(www.cemk.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는 기윤실 사무처(02-794-62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목회자 소득세 신고’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세금 납부’가 아니라 ‘소득세 신고’라고요?

‘종교인 세금 납부’ 또는 ‘성직자 세금 납부’라고 표현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개념상 불필요한 오해와 저항의 소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금 납부’가 아니라 ‘소득세 신고’입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가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이 많으면 ‘납부’가 되고, 소득이 적으면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중과세 아닌가요?

목사가 받는 생활비가 이미 세금을 낸 성도들이 낸 헌금이기에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중과세'는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성격의 조세를 두 번 이상 부과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세금을 낸 시민들의 기부금에서 월급을 받지만 모두 소득신고 대상입니다.

이웃사랑실천으로서의 목회자 소득세 신고

세금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 각 사람이 부담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내가 부담하지 않으면, 그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 누군가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목회자가 근로자나? 이중과세 아닌가? 등의 소모적인 논쟁을 떠나 목회자의 소득세 신고 및 해당자의 세금 납부는 이런 관점에서 신앙의 덕을 세우고, 이웃사랑 실천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목회자 소득세 신고

- 이번 97회기 총회에는 4개 노회에서 '목회자 세금납부'와 관련된 헌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심 갖고, 통과를 촉구합니다.(남수원노회 '목회자 납세에 대한 연구위원회' 헌의 / 대전노회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세금문제 연구위원회' 헌의 / 서울, 성남노회 '목회자 세금납부를 위한 연구위원회' 헌의)
- 목회자 소득신고 절차는 총회 기간에 나눠드리는 <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문의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02-741-2793, www.cfnet.kr)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목사 성추행 사건'에 대해 권징과 치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작년 가을 무렵 교회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실이 있어...

한국교회 차세대 지도자로 여겨지던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 사건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사건 장소가 교회 내 당회장실이었다는 것과 드러난 피해자만 10여 명에 이른다는 것, 이는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 충동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치료와 권징이 필요한 사안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병욱 목사는 사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삼일교회에서 멀지 않은 홍익대 인근에 '홍대새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성추행만도 기가 막히는 일인데,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반성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없이 목회를 재개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성추행 반성과 사과 없이 목회 재개, 사회적 공분과 비판 잇달아

장로교 헌법 정치편, 제2조(목사의 자격)를 보면 "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善良)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가 할지니 모든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여 범사에 존절함과 성결함을 나타낼 것이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外人)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총회와 평양노회는 목회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성추행을 자행한 전병욱 목사에게 대해 합당한 권징과 치리를 함으로써, 이 사건으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공교회의 권위를 다시금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가 목회자의 성 문제를 일부 목회자의 일탈 차원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대처하고, 교육해야 하는 과제로 여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학부의 '목회자 윤리강령' 청원안 통과를 촉구합니다!

목회자 윤리강령 청원안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며 목양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그 선함과 사랑함과 성결함이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에 따라 그 거룩한 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01조 (소명) 목회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2조 (목회직의 본질) 목회자는 목사의 직이 성도들의 위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중재하는 제사장적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직분으로서, 이 직분을 위임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명심해야 한다.

제03조 (협력사역으로서의 목회직) 목회자는 목회직이 한 교회 안의 다른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동료 목회자들과 협동하는 가운데 수행되어야 할 사역임을 명심해야 한다.

제04조 (교회정치) 목회자가 수행하는 교회정치는 투명해야 하며, 주님으로부터 위임된 교회정치권력은 성도들을 억압하는 수단이 아니라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05조 (영적 도덕적 자질) 목회자는 목회직의 성공적인 수행이 목회자 자신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자질에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끊임없는 영적 생활과 훈련을 통하여 높은 영적 수준을 유지하고 도덕적인 덕을 갖추기 위하여 진력해야 한다.

제06조 (전문성) 목회자는 목회직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곧 성경과 신학과 인간 역사와 사회 전반에 대한 깊고 넓은 지식과 교회 섬김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 등을 갖추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07조 (설교윤리)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치며 설교하는 일이 본무인즉 말씀연구와 묵상에 진력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설교내용을 연구 자료와 인용을 넘어 자기 자신의 설교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근절되어야 한다.

제08조 (성도들에 대한 태도) 목회자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존중하되, 성도들과 소명에 따른 목양사역적인 관계에서 질서와 협력 관계에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제09조 (비밀유지의 의무) 목회자는 목회상담 등과 같은 목회적 돌봄의 과정에서 알게된 성도들의 개인적인 정보, 특히 내밀한 정보를 설교와 여타 방법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악영향이 예상되거나 피상담자 자신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추천서) 목회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교인들에 대한 추천의뢰가 들어올 때 목회직의 신뢰성과 권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진실하게 서술해야 한다.

제11조 (성결한 성윤리) 목회자의 부부생활은 결혼 생활 속에서 성결한 생활을 유지하여야 하며 혼외정사나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은 목회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여 교회에 영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제12조 (경제생활) 목회자의 경제생활은 한 교회 안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동료 목회자, 그리고 사회의 일반인들에게 상실감과 의혹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영위되어야 함은 물론 교인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13조 (교회재정) 목회자가 교회재정의 운용에 대해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재정 관리의 실무업무는 직분 자들로 담당하게 하고 재정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 처리 등 객관적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제14조 (사회활동) 목회자는 목양의 본질적인 사역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사회를 위한 사역 곧 공공목회에 참여할 수 있다.